#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82

발의연월일: 2022. 6. 28.

발 의 자:문진석・김병욱・김윤덕

김교흥 • 이용빈 • 김병기

서영석 • 변재일 • 윤재갑

이정문 • 이형석 • 조오섭

우원식 의원(13인)

### 제안이유

이륜자동차는 저렴한 유지비용과 이동 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화물 운송에 적합하고 여가목적의 수요도 증가하는 등 이륜자동차의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감소하는 반 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처럼 이륜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불법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안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륜자동차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정기검사 제도에 도입하여 시행중

에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 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 (안 제51조)
- 나.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2)
- 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기술인력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 시 지정 제한, 휴·폐업 시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1조의3)
- 라.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안 제51조의4)
- 마.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5)
- 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이륜자동차 검사 관리업무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72조)
- 사.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74

조 및 제76조)

아.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79조, 제80 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부터 제5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 신고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 륜자동차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 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 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 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 여부와 차대번호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
-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 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류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장면 및 그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이륜자동차검사의 방법, 검사항목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

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⑥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륜자동 차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 륜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5.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6. 제51조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 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 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9.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10. 제51조의3제3항 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 12. 제51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13.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14.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이륜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이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 자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 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 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 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5. 제51조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7. 제51조의3제1항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

사를 한 경우

- 8.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4조 및 제37조"를 "제34조, 제34조의2,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실측확인"으"를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 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11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5항"을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으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한다.

제75조제1호 중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을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택시미터의 검정"을 "택시미터의 검정"을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5조의2 또는 제47조"를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으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77조의2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 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9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제8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

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 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제81조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82조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의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 인력으로 선임한 자

제84조제4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 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법 시행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제5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제51 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① 국토교
	통부렁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 신
	고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이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
	하는 검사(이하"이륜자동차검사"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48조제
	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하고 다시 사
	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 신
	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u>실시하는 검사</u>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
	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
	<u>는 검사</u>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 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와 차대번호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 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
-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륜자 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 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

<신 설>

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장면 및 그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륜자동차검사의 방법, 검사항목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 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 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 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 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u><신 설></u>

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 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 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 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렁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 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 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 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 다.
- ⑥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륜자 동차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 당 자동차가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8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

<신 설>

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 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 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 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 <u>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u> 성한 경우
- 5.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
   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
   여 검사한 경우
- 6. 제51조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오
- 7.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 동차검사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이 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 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 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8.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9.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10. 제51조의3제3항 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 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

지 아니한 경우

- 11.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업 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 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 우
- 12. 제51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료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13.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

   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14.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

   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경우
-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

사업무를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이륜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도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 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 의 직무 등) 제51조의2제1항 및 제 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이 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

<신 설>

- 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검상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 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 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 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 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

여 검사한 경우

- 5. 제51조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수
- 6.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7. 제51조의3제1항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8.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그 거치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 저 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 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 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 2부터 제30조의6까지, 제31조, 제3 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 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 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 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 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 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 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 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 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 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 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

<u>도 강안다.</u>
세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조, 제34조의2, 제37조, 제43조의3
<u>및 제46조의2</u>
실측확

인"으로 본다.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교통부 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하게 할 수 있다.

1. ~ 11. (생략)

<u><신 설></u>

<신 설>

12. ~ 15. (생략)

② ~ ④ (생 략)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 저 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

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
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
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
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
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
세72조(보고·검사) ①
<u>.</u>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11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1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74조(과징금의 부과) ①
-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 -

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u>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u>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u>제45조</u> <u>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u>에 따른 지정취소
  - 2. ~ 7. (생 략)
-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
자동차검사대행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청문)
1 <u>제45조</u>
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
<u> 조의4제1항</u>
2. ~ 7. (현행과 같음)
제76조(수수료)

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 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 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 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 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 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 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 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 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 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 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 · 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u>택시미터의 검정, 제5</u>
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
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
<u>사</u>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 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 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 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 1. ~ 4. (생 략)
-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
  5조, <u>제45조의2 또는 제47조</u>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
  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
  자, 지정정비사업자, <u>종합검사지</u>
  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
  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 13. (생 략) <u><신 설></u>

14. ~ 18. (생 략)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 4. (현행과 같음)
5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
의2 또는 제51조의3
종합검사지정정비사
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
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6. ~ 13. (현행과 같음)
<u>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u>
검사를 신청하는 자
14. ~ 18. (현행과 같음)
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1. ~ 7의2. (생 략) <u><신 설></u>

<신 설>

8. • 9. (생략)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신 설>

13. ~ 19. (생 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 (생 략) <신 설>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
차검사대행 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
차정기검사 업무
8.•9.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
<u>를</u> 한 자
13. ~ 19.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1.∼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

5. ~ 10. (생략)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5. (생략) <신 설>

<신 설>

25의2. • 25의3. (생략)

26. ~ 28. (생략)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82조(벌칙) ----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 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 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 륜자동차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 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 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 하고 부정한 확인 ·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5. ~ 10. (현행과 같음)

제81조(벌칙) -----

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 륜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 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 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 한 자

25의4. · 25의5. (현행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과 같음)

26. ~ 28. (현행과 같음)

의 벌금에 처한다.

1. 삭 제

1의2. ~ 5의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 7. (생략)

제84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 19. (생략)

<신 설>

20. ~ 24. (생 략)

(5) • (6) (생략)

-----.

1의2.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여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의제1항제4호를 위반 하여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 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 • 7.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

----**.**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 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 지 아니한 <u>자</u>

20. ~ 24.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